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8

발의연월일: 2020. 7. 22.

발 의 자:추경호·강대식·윤창현

임이자 · 김정재 · 박덕흠

김석기 · 이종배 · 윤한홍

김희국 · 김용판 의원

(11인)

제안이유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 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 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금지(안 제2조의2 및 제22조의2)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 함.

- 나.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5조의2제1항제4호) 현행법상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나, 2012년 12월 18일 「군인사법」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
- 다.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안 제6조제5항)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사가 경과실로 인해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도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

라.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 변경(안 제14조제1항)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하고자 함.

마.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안 제14조의3 신설)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 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함.

바.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안 제16조의15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7항·제8항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사.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12조 의3 및 제22조의2)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 칙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 고자 함.

아. 위법한 명의 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 신설(안 제25조 신설)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세무사의 불법적 명의 대여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고자 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 세무법인 등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2제1항제4호 중 "경리병과(經理兵科)"를 "재정병과(財政兵科)"로, "경리 업무"를 "재정 업무"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세무사는 그 등록사항이"를 "세무사는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로 한다. 제1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1월 31일까지"를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① 5급 이상(다만,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 4제1항제4호 및 제74조의2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명예퇴직한 자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이하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세무대리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1.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법인 등의 담당세무사로 지정되는 경우
 - 2.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다른 세무사,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 3. 세무법인 등의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담당세무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 ③ 제1항의 국가기관의 범위 및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조의8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조의13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조의15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세무법인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한국세무사회의 장은 그 내용을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대한 공개범위와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를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세무사에 대한 징계내용의 공개범위와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로 한다.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의 장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협회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15 중 "제6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4항"을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제16조의15제2항"을 "제16조의15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22조의2제1호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12조의3"을 "제12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조의2를 위반하여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 3. 제12조의3제2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린 자
- 4. 제12조의3제3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 5.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수임한 자

제24조 본문 중 "제22조의2제1호·제2호"를 "제22조의2제2호·제6호" 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몰수·추징)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조의2(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
	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 세
	무법인 등에게 제2조의 세무대
	리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
	<u>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u>
	<u>니 된다.</u>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	
제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위 이상의 <u>경리병과(經理</u>	4 <u>재정병과(財</u>
<u> 兵科)</u> 장교로서 10년 이상	政兵科)
군의 <u>경리 업무</u> 를 담당한 경	<u>재정 업무</u>
력이 있는 자	
제6조(등록) ① ~ ④ (생 략)	제6조(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u>세무사</u>	⑤ <u>세무사는</u>
<u>는 그 등록사항이</u> 변경된 경우	<u>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u>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설치·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u>등록사항이</u>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생 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신 설>

<신 설>

제14조(업무실적 보고) ① 세무 저 사(법인 및 단체 소속 세무사 를 포함한다)는 전년도에 처리 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 31일 까지 한국세무사회(법률 제 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 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 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 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 무실적 내역서는 신고 · 신청대 리, 청구대리, 세무조사대리, 자문 • 고문, 세무조정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 되 수임액, 수임건수, 공직퇴임 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

승)	
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	<u>त</u> <u>ठ</u>
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u> </u>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u>z</u>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1
<u>된다.</u>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이	<u>ની</u>
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	<u>}</u>
<u>는 아니 된다.</u>	
제14조(업무실적 보고) ①	_
	_
	_
	_
	_
7월 31일까지	_
	_
	_
	_
	_
	_
	_
	_
	_
	_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생략)<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① 5급 제40조의4제1항제4호 및 제74 조의2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명예퇴직한 자의 경우 특별승 진임용 전 직급으로 퇴직한 것 으로 본다)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 무사(이하 "수임제한대상 공직 퇴임세무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 원 등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 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세무대 리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 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

제16조의6(자본금 등) ① (생략)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u>대차대조표</u>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1.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 사가 세무법인 등의 담당세무 사로 지정되는 경우
- 2.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 사가 다른 세무사,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세무 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 3. 세무법인 등의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수임제 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담당세무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 ③ 제1항의 국가기관의 범위 및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 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6조의6(자본금 등) ① (현행과 같음)

-- <u>재무상태표</u>-----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 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 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 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 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생 략)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2) ----------<u>재무상</u>태표-----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 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 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 을 말한다. 제16조의13(해산) ①・② (생 제16조의13(해산) ①・② (현행과 같음) 략)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 ③ -----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의 해 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16 조의7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 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 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 -----재무상태표-----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

- 15 -

④ (현행과 같음)

야 하다.

④ (생 략)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②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7조(징계) ① ~ ⑥ (생 략)

<신 설>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 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 적으로 밝혀 그 세무법인과 한 국세무사회의 장 및 국세청장 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한 국세무사회의 장은 그 내용을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인터 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 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 무법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 정지에 대한 공개범위와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징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 설>

①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15(준용규정) 외국세무 지 가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 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 항ㆍ제3항제1호 및 제4항, 제 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 16조의13, 제16조의15제2항, 제 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 1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속협회의 장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
속협회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
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⑨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세무사에 대한 징계내용
의 공개범위와 시행 방법 등에
<u>관하여</u>
제19조의15(준용규정)
제6조제2항, 같
<u>제6조제2항, 같</u> 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

제222	준의	2(벌	칙)	다	음	각	호.	의
어크	= `	하나여	भी ह	ㅐ당	하는	사	는	1
년	0)	하의	징약	1 5	돈는	1천	만	원
o) a	하의	벌근	구에	처형	하다.			

<신 설>

1.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신 설>

<신 설>

<신 설>

 2. ~ 5. (생 략)

 제24조(양벌규정) 세무법인의 사 제

 원 또는 소속세무사나 그 밖의

제22조의2(벌칙)
1. 제2조의2를 위반하여 세무대
리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u>2.</u> 제12조의3제1항
· 3. 제12조의3제2항(제16조의16
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린 자
4. 제12조의3제3항(제16조의16
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
선한 자
 5.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수임
한 자

<u>5.</u> (현 3년 전 1) 제24조(양벌규정)
/미/파스(O 린 II ' O /

종업원이 그 세무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2조의2 제1호·제2호 또는 제23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세무법인에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다만, 세무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5조(몰수·추징) 제12조의3(제 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 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 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 징한다.